〈 2021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 시행 안내 〉

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의거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평가·지정하고, 외국인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
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유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.

2020년 12월 30일

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

1. 사업목적

○ 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「의료해외진출법」)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에서 한국 의료서비스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가경제 보건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

○ 외국인환자 대상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국내 의료기관 소개를 통해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

2. 신청기간

○ (신청기간) ‘21년 1월 1일부터 상시접수

* 신청 이후 현지조사 및 지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**최소 3개월 이상 소요**

* 조사위원 배정 등 사유로 신청일부터 현지조사까지 약 2개월 소요 예정이므로 **희망조사일로부터 최소 2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**
  예) 희망조사일이 2021년 3월 15일인 경우, 2021년 1월 14일까지 신청

○ (신청접수)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(https://www.medicalkorea.or.kr) 홈페이지 내 ‘평가지정 신청’을 통해 사전컨설팅, 모의평가, 본 평가 등 온라인 신청

3. 신청자격

○ 「의료해외진출법」 제6조에 따라 **등록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**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를 보유한 의료기관으로 **아래의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**

- 유치사업 등록 유효기간의 잔여기일이 **평가예정일을 기준으로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유치기관 등록 · 갱신을 완료**한 의료기관
- 배상책임보험 가입, 진료과별 전문의 보유 등 **유치사업 등록요건을 상시 유지**하고 있는 의료기관
- **직전 연도의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**를 완료한 의료기관
- **병원급 이상**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**의료기관 인증**을 받은 기관

* 평가 진행 중 의료법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,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

** 단,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기관에 한함

4. 평가·지정 절차 및 방법

접수 공고 (한국보건산업진흥원)		직전연도 말 또는 매년 초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(https://www.medicalkorea.or.kr) 공고
⇩		
평가 신청 (신청 의료기관)		조사희망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신청
⇩		
일정확정 및 접수완료 (의료기관평가인증원)		의료기관과 인증원이 협의하여 일정 확정 후 접수 완료
⇩		
사전컨설팅 (의료기관평가인증원)	선택사항	신청 의료기관 희망여부에 따라 사전 컨설팅 진행
⇩		
모의평가 (의료기관평가인증원)	선택사항	신청 의료기관 희망여부에 따라 본 평가 전 모의평가 진행 (본 평가와 동일한 방식)
⇩		
현지조사(본 평가) (의료기관평가인증원)		조사일수 : 1.5일, 평가위원 2명
⇩		
지정심의위원회 (한국보건산업진흥원)		분기별 1회 개최
⇩		
결과공표 및 지정 (보건복지부, 한국보건산업진흥원)		지정 유효기간 내 지정마크 사용

○ **(컨설팅)** 신청의료기관 평가부담 완화 및 효율적인 평가준비 지원을 위해 희망 의료기관 대상 무료 컨설팅 제공

- (사전 컨설팅) 효율적인 평가 준비 및 미비점 보완을 위한 실질적인 평가 가이드 제공
- (모의평가) 현지조사 전 의료기관의 평가 준비 정도의 최종 점검을 위해 실제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모의평가 시행

※ 본 평가(현지조사)와 별도로 '사전 컨설팅' 또는 '모의평가' 상시 신청 가능

○ **(현지조사)** 본 평가로써 평가위원이 신청기관을 방문, 현지조사를 진행하며 조사시간은 일과시간(09:00~18:00) 기준으로 1.5일 소요

구 분	평가위원 수	조사일수	평가 비용
병원급	2인	1.5일	코로나 19 종식 전까지 평가비용 한시적 면제
의원급			

* 평가위원 2인외 조사보조원(유치국가언어별 전문가) 2인 동행

- 현지조사 일정은 접수신청 후 평가기관(의료기관평가인증원)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조사수요가 특정기간에 집중될 경우 월별 조사기관 수 제한으로 조사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

○ **(평가 방법)** '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'와 '환자안전체계'로 나누어 평가

< 조사체계 >

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	환자안전체계
1.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및 운영체계	4. 환자안전보장활동
2. 전문의 보유	5. 환자진료
3. 환자권리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	6. 의약품관리
	7. 감염관리
	8. 시설 및 환경관리

- (병원급 의료기관) 조사항목 중 '환자안전체계' 항목의 조사 면제
- (의원급 의료기관) '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', '환자안전체계' 조사항목 모두 조사

○ **(조사 기준)** 평가기준 중 아래 조사항목은 **당해연도 시행 공고 기준 적용**

- **(1.1.1 유치실적)** 국제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전체 유치시장이 위축되어, '19년 유치실적을 평가기준으로 적용 및 신청기관은 19년도 실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음
- **(1.1.2 만족도조사)** 국제적 감염병 확산에 따라 전체 유치시장이 위축되어, 신청기관은 '18~'19년의 실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음

5. 지정기준

○ **(판정기준)** 아래 표의 ①~④ 조건 **모두 충족 시**

판 정	① 필수항목	항목(ME) 평균 점수			비 고
		② 전체	③ 장별	④ 기준별	
지정기준 충 족	무 또는 하 없음	8점 이상	7점 이상	5점 이상	①~④번 모든 조건 충족해야 함

○ **(조사항목별 점수산정)** '상/유' 10점, '중' 5점, '하/무' 0점

6. 지정 및 결과통보

○ **(지정)** 현지조사 후 지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 통보

○ **(지정심의위원회)** 신청기관 평가현황에 따라 분기 또는 반기별 개최

- 위원회 심의일이 포함된 월 기준으로 전월 말일까지 현지조사 완료된 신청기관에 한하여 심의

※ 평가신청 의료기관에 한해 지정심의일 별도 안내

○ **(지정 유효기간)** 지정일로부터 2년이며, 재지정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신청 필요

※ 「의료해외진출법」 제14조의 지정 유효기간이 개정되는 경우 旣지정 의료기관은 소급하여 적용

○ **(결과통보)** 지정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및 지정기관 발표

- (이의신청) 결과통보 후 30일 이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신청
- (지정서 수여) 심의결과 발표(지정기관 발표) 이후 30일 이내 지정서 수여

○ **(지정 취소)** 지정 기관이 「의료해외진출법」 제2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지정 효력 상실

- 또한, 「의료해외진출법」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,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

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및 제25조

○ **제14조(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)** 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,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.

○ **제25조(지정의 취소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7. 지정기관 주요 지원사항 * 지원책 확대 추진 중

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6조

○ **제14조(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)**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
2.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
3.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○ **제6조(지정 유치기관의 표시 및 재지정)** ④ 법 제14조제4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정부 간 협약에 따라 입국하는 의료인 연수생 또는 외국인환자의 우선적 배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.

○ **(지정마크)** 지정일로부터 만료일까지 의료기관별 지정마크 사용 가능



* 「의료해외진출법」 제14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지정 의료기관(Korean Accredited Hospitals for serving Foreign patients)에 한하여 지정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음

○ **(국내·외 홍보지원)** 국내·외 홍보회* 참가 지원, 서울 주요 지하철 역사** 홍보, 지정기관 해외 홍보 사업비*** 지원 등 정부주도 적극 홍보 지원

* Medical Korea 컨퍼런스 등 진흥원 주관 국내외 행사 시(대표단 선발 등) 지정기관 참여 적극 우대

** 서울 주요 5개 지하철역 키오스크 운영('19.11월~, 명동역·광화문역·신사역·압구정역·김포공항역)

*** 해외 홍보 및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지정기관 대상 공고를 통해 홍보예산 등 지원

○ **(운영자금 융자지원)** 지정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**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**(관광진흥개발기금, '20.1월~)

* 최근 1년간 영업 비용의 50%, 30억원 이내 융자지원(기준금리에서 0.75% 우대), 5년 상환(2년 거치 3년 분할상환)

○ **(전자비자 발급)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선정* 평가(법무부)** 시, 2020년부터 지정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**가점 부여**('20년~)

* 의료관광 초청 또는 진료 실적이 우수하고 불법 체류율이 낮은 유치기관 중 법무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 (전자사증 신청,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 등의 혜택 부여)

○ **(포상지원) 국내외 표창 후보자 추천 및 참여 지원**

○ **(국제의료사업 우대지원)** 진흥원 주관 국제의료사업 참여 시 가점 또는 우대 지원

* (대상) 외국의료인 국내연수 수행기관 모집사업,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, 보건의료 인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기존 및 신규 사업 확대 중

8. 신청방법

○ **신청방법** :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 홈페이지 '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' - '컨설팅 및 평가신청' 참조

※ 의과, 치과, 한의과별 세부 평가기준 진흥원 홈페이지(https://www.khidi.or.kr/kps) 사업공고 또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(https://www.medicalkorea.or.kr) 알림마당 참조

○ **제도 및 신청 문의** :

-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사업실 (☎02-2076-0692, sjh@koiha.or.kr)
- 한국보건산업진흥원 (☎043-713-8145, hr5696@khidi.or.kr)

붙임1 **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관련 의과 평가기준**

□ 2개 영역 / 8개 장 / 23개 범주 / 35개 기준 / 149개 조사항목

장(Chapter)	범주(Category)	기준(Standard)	항목 (ME)	종별	
				병원급 이상	의원
Ⅰ.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	8	13	56	56	51
1.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	1.1 외국인환자의 지속적 유치 및 관리	1.1.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	3	3	3
		1.1.2 만족도조사	3	3	-
		1.1.3 입퇴원 및 외래수속관리 서비스	4	4	4
		1.1.4 합리적 운영	4	4	4
	1.2 홍보 및 유치활동	1.2.1 정보접근성	3	3	3
		1.2.2 유치채널 확보	3	3	3
	1.3 통역서비스 제공	1.3 통역서비스 제공	5	5	5
2. 전문의 보유	2.1. 전문의 환자진료체계	2.1. 전문의 환자진료체계	6	6	6
3. 환자권리 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	3.1 환자권리존중	3.1 환자권리존중	5	5	5
	3.2 동의서	3.2 동의서	7	7	7
	3.3 의료분쟁예방 및 처리 체계	3.3 의료분쟁예방 및 처리 체계	5	5	5
	3.4 환자 편의 제공 및 고충 처리	3.4.1 환자 편의 제공	4	4	2
		3.4.2 환자 고충 처리	4	4	4
Ⅱ.환자안전체계	15	22	93	-	93
4. 환자안전 보장활동	4.1 환자안전 보장활동	4.1.1 정확한 환자확인	5	-	5
		4.1.2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	4	-	4
		4.1.3 수술/시술의 정확한 수행	5	-	5
		4.1.4 낙상 예방활동	2	-	2
		4.1.5 손위생 수행	3	-	3
	4.2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	4.2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	3	-	3
5. 환자진료	5.1 응급상황대처	5.1 응급상황대처	4	-	4
	5.2 수술/시술관리	5.2.1 수술/시술 계획	4	-	4
		5.2.2 수술/시술 중 환자안전보장	5	-	5
	5.3 마취진정관리	5.3.1 마취 진료	5	-	5
		5.3.2 진정 치료	4	-	4
		5.3.3 환자상태 모니터링	3	-	3
6. 의약품관리	6.1 의약품 보관	6.1 의약품 관리	8	-	8
	6.2 의약품 처방 및 조제	6.2 주사용 의약품 관리	2	-	2
	6.3 의약품 투여	6.3 의약품 투여	5	-	5
7. 감염관리	7.1 감염관리체계	7.1 감염관리체계	2	-	2
	7.2 의료기구 감염관리	7.2 의료기구 감염관리	4	-	4
	7.3 소독/멸균 및 세탁물 관리	7.3 소독/멸균 및 세탁물 관리	7	-	7
	7.4 수술실/시술실 감염관리	7.4 수술실/시술실 감염관리	4	-	4
8. 시설 및 환경관리	8.1 위험물질 안전관리	8.1 위험물질 안전관리	4		4
	8.2 의료기기 안전관리	8.2 의료기기 안전관리	4		4
	8.3 화재안전 관리활동	8.3 화재안전 관리활동	6		6

※ **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조사항목 56개,** 의원급 의료기관 조사항목 144개

붙임2 **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관련 치과 평가기준**

□ 2개 영역 / 8개 장 / 25개 범주 / 37개 기준 / 153개 조사항목

장(Chapter)	범주(Category)	기준(Standard)	항목 (ME)	종별	
				병원급 이상	의원
Ⅰ.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	**8**	**13**	**55**	**55**	**50**
1.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	1.1 외국인환자의 지속적 유치 및 관리	1.1.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	3	3	3
		1.1.2 만족도조사	3	3	-
		1.1.3 입퇴원 및 외래수속관리 서비스	4	4	4
		1.1.4 합리적 운영	4	4	4
	1.2 홍보 및 유치활동	1.2.1 정보접근성	3	3	3
		1.2.2 유치채널 확보	3	3	3
	1.3 통역서비스 제공	1.3 통역서비스 제공	5	5	5
2. 치과의사 환자진료체계	2.1. 치과의사 환자진료체계	2.1. 치과의사 환자진료체계	5	5	5
3. 환자권리 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	3.1 환자권리존중	3.1 환자권리존중	5	5	5
	3.2 동의서	3.2 동의서	7	7	7
	3.3 의료분쟁예방 및 처리 체계	3.3 의료분쟁예방 및 처리 체계	5	5	5
	3.4 환자 편의 제공 및 고충 처리	3.4.1 환자 편의 제공	4	4	2
		3.4.2 환자 고충 처리	4	4	4
Ⅱ.환자안전체계	**17**	**24**	**98**	**-**	**98**
4. 환자안전 보장활동	4.1 환자안전 보장활동	4.1.1 정확한 환자확인	5	-	5
		4.1.2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	4	-	4
		4.1.3 수술/시술의 정확한 수행	5	-	5
		4.1.4 낙상 예방활동	2	-	2
		4.1.5 손위생 수행	3	-	3
	4.2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	4.2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	3	-	3
5. 환자진료	5.1 응급상황대처	5.1 응급상황대처	4	-	4
	5.2 수술/시술관리	5.2.1 수술/시술 계획	4	-	4
		5.2.2 수술/시술 중 환자안전보장	5	-	5
	5.3 마취진정관리	5.3.1 진정 진료	4	-	4
		5.3.2 마취 치료	5	-	5
		5.3.3 환자상태 모니터링	3	-	3
	5.4 기공관리체계	5.4 기공물 및 기공실 관리	5	-	5
	5.5 영상검사실 안전관리	5.5 영상검사실 안전관리	2	-	2
6. 의약품관리	6.1 의약품 보관	6.1 의약품 관리	7	-	7
	6.2 주사용 의약품 관리	6.2 주사용 의약품 관리	2	-	2
	6.3 의약품 투여	6.3 의약품 투여	5	-	5
7. 감염관리	7.1 감염관리체계	7.1 감염관리체계	2	-	2
	7.2 수관 및 표면관리	7.2 수관 및 표면관리	3	-	3
	7.3 소독/멸균 및 세탁물 관리	7.3 소독/멸균 및 세탁물 관리	7	-	7
	7.4 수술실/시술실 감염관리	7.4 수술실/시술실 감염관리	4	-	4
8. 시설 및 환경관리	8.1 위험물질 안전관리	8.1 위험물질 안전관리	4		4
	8.2 의료기기 안전관리	8.2 의료기기 안전관리	4		4
	8.3 화재안전 관리활동	8.3 화재안전 관리활동	6		6

※ **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조사항목 55개**, 의원급 의료기관 조사항목 148개

붙임3 **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 관련 한의과 평가기준**

□ 2개 영역 / 8개 장 / 21개 범주 / 34개 기준 / 134개 조사항목

장(Chapter)	범주(Category)	기준(Standard)	항목 (ME)	종별	
				병원급 이상	의원
Ⅰ. 외국인환자 특성화체계	8	13	52	52	47
1.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및 운영체계	1.1 외국인환자의 지속적 유치 및 관리	1.1.1 외국인환자 유치실적	3	3	3
		1.1.2 만족도조사	3	3	-
		1.1.3 입퇴원 및 외래수속관리 서비스	4	4	4
		1.1.4 합리적 운영	4	4	4
	1.2 홍보 및 유치활동	1.2.1 정보접근성	3	3	3
		1.2.2 유치채널 확보	3	3	3
	1.3 통역서비스 제공	1.3 통역서비스 제공	5	5	5
2. 한의사 환자진료체계	2.1. 한의사환자진료체계	2.1. 한의사 환자진료체계	5	5	5
3. 환자권리 존중 및 의료분쟁 예방	3.1 환자권리존중	3.1 환자권리존중	5	5	5
	3.2 동의서	3.2 동의서	4	4	4
	3.3 의료분쟁예방 및 처리 체계	3.3 의료분쟁예방 및 처리 체계	5	5	5
	3.4 환자 편의 제공 및 고충 처리	3.4.1 환자 편의 제공	4	4	2
		3.4.2 환자 고충 처리	4	4	4
Ⅱ.환자안전체계	13	21	82	-	82
4. 환자안전 보장활동	4.1 환자안전 보장활동	4.1.1 정확한 환자확인	5	-	5
		4.1.2 의료진간 정확한 의사소통	4	-	4
		4.1.3 낙상 예방활동	2	-	2
		4.1.4 손위생 수행	3	-	3
	4.2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	4.2 환자안전보고체계 운영	3	-	3
5. 환자진료	5.1 응급상황대처	5.1 응급상황대처	4	-	4
	5.2 시술관리	5.2.1 침 시술	4	-	4
		5.2.2 약침 시술	3	-	3
		5.2.3 뜸 시술	3	-	3
		5.2.4 부항 시술	3	-	3
		5.2.5 수기요법	3	-	3
		5.2.6 기타 시술	3	-	3
6. 의약품관리	6.1 의약품 보관	6.1 의약품 관리	5	-	5
	6.2 의약품 조제	6.2 주사용 의약품 관리	5	-	5
	6.3 의약품 투여	6.3 의약품 투여	5	-	5
7. 감염관리	7.1 감염관리체계	7.1 감염관리체계	2	-	2
	7.2 의료기구 감염관리	7.2 의료기구 감염관리	4	-	4
	7.3 소독/멸균 및 세탁물 관리	7.3 소독/멸균 및 세탁물 관리	7	-	7
8. 시설 및 환경관리	8.1 위험물질 안전관리	8.1 위험물질 안전관리	4		4
	8.2 의료기기 안전관리	8.2 의료기기 안전관리	4		4
	8.3 화재안전 관리활동	8.3 화재안전 관리활동	6		6

※ **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조사항목 52개**, 의원급 의료기관 조사항목 129개